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00. 00. (제 회)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국가데이터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6. 00 . 00.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시행령)의 근거규정인 통계법 제5조의2 개정(개정21575호)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소속이 재정경제부에서 국무총리소속으로 격상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국무총리 및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변경되는 한편, 위원 구성은 35명으로 확대 개편되었음.

이에 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직 위원의 구성, 공동위원장 체제의 운영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수 등 구성안 변경

- 1) 근거법률인 통계법 제5조의2 개정(개정21575호)에 따라 위원장이 “재정경제부 장관”에서 “공동위원장(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위원장 1인에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의미를 명확화하고 위원 수도 기존 30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수정

나. 당연직 위원 추가 변경

- 1) ‘26.1.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국가통계위원회 당연직

부처로 명시되어 있던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로 조직이 개편되어, 이에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통계 관련 예산을 통할하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각 국가통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 2) 또한, 중소기업정책 및 관련 통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국가 통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어 있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교육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성평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교육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성평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위원장이”를 각각 “**국무총리가**”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을 “**국무총리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장은 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이 부득이한”을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으로, “위원장이 지명하는”을 “**국무총리가 미리 지명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통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3조에 따라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u>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u>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 ----- <u>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u> ----- -----.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교육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성평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u> 및 국가데이터처장		1. <u>재정경제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교육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성평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기획예산처장관</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통계 또는 관련 분야(위원회 심의와 관련 있는 경제 · 사회 · 정책 등의 분야를 말한다.		3. ----- ----- -----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위원장이</u> 위촉하는 사람 4.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u>위원장이</u> 위촉하는 사람 제4조의2(위원의 해촉) <u>위원장은</u>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u>위원장은</u>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u>위원장이</u>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u>위원장이</u>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 <u>국무총리가</u> ----- ---- 4. ----- ----- ----- <u>국무총리가</u> ----- ----- 제4조의2(위원의 해촉) <u>국무총리는</u> ----- ----- ----- ----- -----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u>위원장은</u> <u>각자</u> ----- -----. ② <u>위원장이</u> 모두 부득이한 ----- ----- ----- <u>국무총리가</u> 미리 지명한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	
연 락 처	(042) 481 - 3616